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2022. 4. 29(금)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발령 목록----- 1

조 례

- 남원시 조례 제1769호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7
- 남원시 조례 제1770호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 남원시 조례 제1771호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15
- 남원시 조례 제1772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22
- 남원시 조례 제1773호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34
- 남원시 조례 제1774호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36
- 남원시 조례 제1775호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40
- 남원시 조례 제1776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41
- 남원시 조례 제1777호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46
- 남원시 조례 제1778호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9
- 남원시 조례 제1779호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56
- 남원시 조례 제1780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65
- 남원시 조례 제1781호 남원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71
- 남원시 조례 제1782호 남원시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1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702호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82
- 남원시 규칙 제703호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83

예 규

- 남원시예규 제30호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89
- 남원시예규 제31호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 폐지지침 ----- 122

공 고

- 남원시공고 제2022-991호 도로지정공고-----123
- 남원시공고 제2022-994호 공시송달공고-----124
- 남원시공고 제2022-995호 공시송달공고-----126
- 남원시공고 제2022-1015호 도로지정공고-----128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자치법규 공포·발령 목록

- 총 18건 (조례 14, 규칙 2, 예규 2) -

□ 조례 : 14건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비고
1769	남원시 시장직 인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p>가. 구성 인원, 특정 성별위원 수 제한, 위원회 존속기간 등 (안 제2조)</p> <p>나. 위원장의 직무,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안 제3조)</p> <p>다.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기준 등 (안 제4조)</p> <p>라. 시 소속 직원의 위원회 사무직원 파견근 무 등 (안 제5조)</p> <p>마. 위원회의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및 차량 등에 대한 예산 지원,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협조 등 (안 제6조)</p> <p>바. 위원회 회의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안 제7조)</p> <p>사.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백서 작 성 및 공개 등 (안 제8조)</p>	
1770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p>가.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참여 비율 규정 (안 제6조)</p> <p>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명시 (안 제13조)</p> <p>다.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 (안 제3조, 제6조, 제9조, 제13조)</p>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 정 내 용	비고
1771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p>○ 원칙적으로 사용료 반환을 금지한 내용 삭제</p> <p>가. (안 제1조) 「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제16조</p> <p>-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p> <p>나. (안 제2조)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p> <p>-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p> <p>다. (안 제3조)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4조</p> <p>-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 삭제</p> <p>라. (안 제4조) 「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p> <p>-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삭제</p> <p>마. (안 제5조)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제11조</p> <p>- “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삭제</p>	
1772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p>가.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가산 규정(안 제14조)</p> <p>나. 특별휴가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6항) (총괄 복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부서장에게 신청)</p> <p>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준용 조항 신설 (안 제21조)</p>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비고
		라. 그 밖의 어문규정, 띄어쓰기 정비 (안 제4조, 제8조, 제15~16조, 제18~19조)	
1773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업무관장 및 출향인의 지위(안 제3조 ~ 안 제4조) 다.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향우회에 대한 포상(안 제6조)	
1774	남원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가.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나. 보조금 지급 등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 다. 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1775	남원시 예가람길조 및 지원에 관한 조 폐지조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1776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가. 예술단 지도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 신설 (안 제15조의2제1항) 나. 지도위원의 예술총감독 겸직 시 적용사항 규정 (안 제15조의2제2항) 다. 어문규정,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8조, 제9조~제11조, 제19조, 제26~제27조, 제33조)	
1777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함 (안 제1조~제2조) 나. 남원시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을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정 내용	비고
		<p>규정함(안 제5조~제6조)</p> <p>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제9조)</p>	
1778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p>가.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p> <p>나. 설치 위치, 시설 운영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p> <p>다. 사용허가 대상,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지원 손해배상 등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9조)</p> <p>라. 위탁운영,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안 제12조)</p>	
1779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p>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p> <p>나. 급식지원 대상 및 방법, 절차,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7조)</p> <p>다.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1조)</p> <p>라. 급식업체의 위생·안전교육,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제15조)</p>	
1780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p>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신설(안 제20조의3)</p> <p>나. 차폐시설(임야) 존재 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안 제20조의2)</p> <p>다. 상위법령 단순 인용 조항 변경(안 제57조, 제58조, 제61조)</p>	

공포 번호	조례명	제·개 정 내 용	비고
1781	남원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가.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구성 (안 제1조~제3조) 나.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훈련 (안 제4조~제6조) 다. 위험도 평가단 지원 등(안 제7조~제9조)	
1782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 규칙 : 2건

공포 번호	규칙명	제·개 정 내 용	비고
702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 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703	남원시의회 사무전 결 규칙	가.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과 전결권자를 규정함(안 제3조, 별표) 다. 전결사항의 사후보고를 규정하고, 전결권자의 부재 시 「남원시의회 직무대리규칙」에 따름 (안 제4조~제5조) 라. 전결권자의 결재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전결권자가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함(안 제6조~제7조)	

□ 예규 : 2건

발령 번호	예규명	제·개 정 내 용	비고
30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가.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제2조)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신고 등에 대한 조치 (안 제3조~제4조) 다.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신고 및 조치 등 (안 제5조~제 6조) 라.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 (안 제7조~제8조) 마.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안 제9조~제11조) 바. 신고·신청의 기록 관리, 위반행위 신고, 이첩·송부, 종결처리 (안 제12조~제16조) 사. 이의신청, 교육, 위반여부 상담, 징계양정 기준 (안 제17조~ 안 제20조)	
31	남원시 개발행위 허가(태양광) 운영 지침 폐지지침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 폐지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69 호

남원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원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70 호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방제”를 “예방 및 구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호선한다”를 “선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제2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용역결과의 평가를 실시”를 “용역결과를 평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학술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3.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u>방제</u>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p>	<p>제3조(적용범위) ①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예방 및 구제</u> ----- -----</p>
<p>제6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p> <p><신설></p> <p>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한다.</u></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중에서 <u>남원시장(이</u></p>	<p>제6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u>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u></p> <p>④ ----- ----- <u>선출한다.</u></p> <p>⑤ ----- <u>사람</u> ----- -----</p>

현행	개정안
<p>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2. (생략)</p> <p>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보궐위원</u>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⑥ -----</p> <p>-----</p> <p>-----.</p> <p>----- <u>새로 위촉된 위원</u>-----</p> <p>-----.</p>
<p>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u>아니하다고</u> 인정되는 경우</p> <p>3. (생략)</p>	<p>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u>않다고</u> -----</p> <p>3. (현행과 같음)</p>
<p>제13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① (생략)</p> <p>② 평가전문위원과 부서의 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u>용역결과의 평가를 실시</u>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결과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제13조(학술용역결과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용역결과를 평가</u>-----</p> <p>-----.</p> <p>③ <u>주관부서의 장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는 경우, 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p> <p>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71 호

남원시 사용료 반환 규정의 법령 불부합 내용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 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 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조(「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다.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

2. 50퍼센트 반환사용예정일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환부) 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제4조(「남원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남원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별표 2의 제8호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의 개정) 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 정지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 정지하였을 경우: 임대료 전액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계약기간 임대료 전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남원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사용료 반환) <u>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p>제16조(사용료 반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제2조(「남원시 지리산소극장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사용료의 반환) <u>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액 반환 	<p>제8조(사용료의 반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동일)

현 행	개 정 안
<p>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p> <p>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대관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p> <p>다.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승인 허가를 취소 신청할 때</p> <p>2. 50퍼센트 반환사용예정일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고, 시장이 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p>	<p>2. (현행과 동일)</p>

제3조(「남원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환부) <u>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환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u></p>	<p>제24조(환부) <u>월액으로서 남원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있어 그 달의 15일전의 취소에 속한 것은 전액을, 16일 이후의 취소에 속한 것은 반액에 상당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u></p>

제4조(「남원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p>	<p>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p>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별표 2의 제8호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사정에 의하여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동일)

제5조(「남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제11조(임대료의 반환) <u>납부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1. <u>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임대료 전액</u></p>	<p>제11조(임대료의 반환)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p> <p>1. <u>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정지한 경우 또는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하였을 경우: 임대료 전액</u></p>

현 행	개 정 안
<p>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p> <p>3.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계약기간 임대료 전액 <개정 2022.2.9.></p>	<p>2.~ 3. (현행과 동일)</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72 호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남원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

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

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사람의 복무는 본직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의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의 복무는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

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에 따른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7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6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한다.

제18조(특별휴가) ①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

어야 한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각각 2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⑥ 시장은 공무원의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5일,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각각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직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계산

2. 신청자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에게 장기재직휴가 신청

3.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할 때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⑦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배우자가 임신기간 중 검진할 때 동행하는 공무원은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줄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3.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의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

⑩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⑪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서문(제2조제2항 관련)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제2조제3항 관련)

1.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가.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2. 선서의 방식

가.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

나.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

3. 선서 책임자

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인사를 총괄하는 부서 또는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별표 2]

공직자의 행동률(제5조제2항 관련)

대민관계	대내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 항상 웃으며 차별 없이 대한다. ○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 문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 반사회와 새마을운동에 앞장서 참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엄수한다. ○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 근검절약한다. ○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한다. ○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 상급자를 존경하고 하급자를 아낀다. ○ 직장환경을 명량하게 한다. ○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	1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형, 형수, 동생, 제수)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삼촌, 숙모, 처삼촌, 처숙모)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 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4조 관련)

1. 연가가산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
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람(즉, 호봉 확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또는, 채용 시 채용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2. 연가가산 일수

가.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 안함

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73 호

남원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라 함은 남원시(이하“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라 함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① 향우회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업무담당 과장이 총괄한다.

② 세부적인 사업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업무 소관부서에서 추진한다.

제4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정발전을 위한 시와 향우회간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등 지원
2. 시정시책 및 축제 홍보를 위한 내 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
3. 그 밖에 교류 및 협력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시장은 시와 향우회간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회원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교류·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74 호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재난구호활동, 평생교육활동 등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를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로, “지원할”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
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
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봉사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활동지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재난구호활동, 평생교육활동 등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보조금 지급 등) <u>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u></p> <p><신 설></p>	<p>제3조(활동지원) ----- ----- <u>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u> ----- ----- <u>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u> 2. <u>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u> 3. <u>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u> 4. <u>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u> 5. <u>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u> 6.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p>제5조(보조금 지급 등) ① <u>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정산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6조</u> (생 략)</p>	<p><u>제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u> <u>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u> <u>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u>에는 공유재산을 봉사회에 무상으로</u> <u>대부할 수 있다.</u></p> <p><u>제7조</u> (현행 제6조와 같음)</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75 호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76 호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립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심신상의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태만히 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을 “규칙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 “규칙이 정하는”을 “규칙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지도위원의 임기) ① 제15조제2항의 예술단 지도위원인 악장, 지휘자, 안무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평정)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 임기 후에는 종전 수석 직책으로 환원된다.

② 예술단의 지도위원이 예술총감독을 겸직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적용된다.

제19조제4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심신상의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한다.

제33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단원의 임기 및 해임) ①·② (생략)</p> <p>③ 시장은 국악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p> <p>1. <u>심신상의 장애</u>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p> <p>2. (생략)</p> <p>3. 지정된 근무를 <u>태만히 하거나</u>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p> <p>4·5. (생략)</p>	<p>제8조(단원의 임기 및 해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u>신체적·정신적 장애</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 <u>게을리하거나</u> ----- -----</p> <p>4·5. (현행과 같음)</p>
<p>제9조(단원의 복무) ①·② (생략)</p> <p>③ 단원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u>아니한</u>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9조(단원의 복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않은</u> ----- -----.</p>
<p>제10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생략)</p> <p>②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규칙이 정하는</u> 바에 따라 연습 및 출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급여 및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규칙에서 정하는</u> ----- -----.</p>
<p>제11조(평정) ① ~ ③ (생략)</p> <p>④ 실기평정위원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규칙이 정하는</u> 바에 따라 수</p>	<p>제11조(평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규칙에서 정하는</u> -----</p>

현행	개정안
<p>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신설></p>	<p>-----.</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지도위원의 임기) ① 제15조제2항의 예술단 지도위원인 악장, 지휘자, 안무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평정)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도위원 임기 후에는 종전 수석 직책으로 환원된다.</p> <p>② 예술단의 지도위원이 예술총감독을 겸직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적용된다.</p>
<p>제19조(어린이국악단 구성) ① ~ ③ (생략)</p> <p>④ 어린이국악단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연령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단장이 선발한다. 단,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19조(어린이국악단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p>
<p>제26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로 균형 있게 구성되도록 한다.</p>	<p>제26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 ----- ----- -----.</p>

현행	개정안
<p>1. ~ 5. (생략)</p> <p>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u>심신상의 장애</u>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p> <p>2. 3. (생략)</p> <p>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u>은 규칙으로 정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27조(위원의 해촉) ----- ----- -----.</p> <p>1. <u>신체적·정신적 장애</u> -----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3조(시행규칙) ----- <u>필요한</u>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77 호

남원시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고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의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5. 고독사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2.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

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방문간호서비스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방법

제7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 예방 사업 등)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례식장,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78 호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가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시에 사무소를 둔 등록된 장애인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이하 “장애인 어울림센터”라 한다)는 장애인단체 종합회관으로서 남원시 봉맞1길 10(향교동)에 둔다.

제4조(시설 및 운영)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2. 교육실, 다목적 강당

3.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1. 장애인의 복지증진

2.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대상)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

2. 전라북도농아인협회 남원시지회

3. 전라북도시각장애인연합회 남원시지회

4. 전라북도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

5. 전라북도꿈드래협회 남원시지회

6. 척수장애인협회남원시지회

7.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사용허가) ①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허가 시,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장애인 어울림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하는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제6조의 제2항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설물손상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경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자가 장애인 어울림센터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 중 시설물이 훼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상 위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 중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 중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여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어울림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의 장애인 어울림센터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종합회관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1. 사용자	단 체 명 (시 설 명)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사 용 목 적						
3. 사 용 기 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사용대상 및 인원		명	
5. 사용 시설명		사무실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		공용시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남원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용허가기간 사업계획서(조직도, 예산서 포함) 2. 시설신고필증 또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활동내역서)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변경) 허가서
(제6조제2항 관련)

1. 사용자	단체명 (시설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2. 사용목적						
3. 사용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4. 사용대상 및 인원		명	
5. 사용시설명		사무실				
6. 사용하고자 하는 부대시설명		공용시설	교육장, 엘리베이터, 화장실, 복도, 강당(다목적실) 등			
<p>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남 원 시 장</p>						

(뒷면)

사 용 허 가 조 건

1.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7조를 준수한다.
2. 장애인 어울림센터 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3. 사용자는 사용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부착한 각종 시설물을 사용기간 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5. 본 허가서 및 관련조례(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자의 해석에 따른다.
6. 상기의 허가조건 미 준수 및 적발 시 『남원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사용제한 함에 동의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79 호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결식 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식·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3. “급식업체”란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소 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남원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제4조(지원 방법)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실태 및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아동급식 카드 가맹점(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지원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급식단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절차)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서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방법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8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경우 우선 지원한 후에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청인,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선정 결과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남원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아동청소년담당과장, 위생안전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 소속)
2. 관계 공무원 및 학부모 대표
3. 관할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점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급식운영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급식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관련 부서의 협조를 통해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및 위생, 만족도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

련한 지도·점검,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와 장부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준용규정) 아동급식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단체의 급식경비 집행과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

제3조(급식지원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식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원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아동급식 신청(추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여름방학 급식지원 받은 자는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됨

(앞쪽)

신청(추천)자	성명	아동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보호자 ※ 신청(추천)자가 보호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확 인 후 작성	성명	관계	동거여부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대상아동 1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대상아동 2	성명	성별 [] 남 [] 여	취학여부 [] 취학 [] 미취학
	학교명 [] 초 [] 중 [] 고등학교	학년	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세)
신청 (추천) 의견	신청(추천)사유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구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input type="checkbox"/>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input type="checkbox"/>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input type="checkbox"/>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읍·면·동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아동급식위원회 결정필요) <input type="checkbox"/>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급식지원 필요 유형 (결식여부)	※ 중복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학기 중 평 일 : [] 조식 [] 석식 토·공휴일 : [] 조식 [] 중식 [] 석식 <input type="checkbox"/> 방학 중 : [] 조식 [] 중식 [] 석식	
	희망 급식 방법	<input type="checkbox"/> 단체급식소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input type="checkbox"/> 일반음식점 [] 도시락 배달 <input type="checkbox"/> 부식 배달 [] 기타 ()	

위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으로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추천)자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신청인(보호자)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이의신청서(제7조 관련)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아동과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부적합 결정이 있음을 안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	20	년	월 일
부적합 내용 및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급식지원 부적합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안 내	처리기간은 시장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80 호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호“500미터”를 “500미터 (다만, 남원시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확인된 시민이 1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할 경우, 차폐시설(임야)이 존재 할 때는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5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다)”로 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0의 기준에 따른다.

②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遮蔽木)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차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

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을 “영 제84조제8항”으로 한다.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을 “영 제84조제4항”으로 한다.

제61조 중 “영 제84조제6항”을 “영 제84조제7항”으로 한다.

별표30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30]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등 기준(제20조의3 관련)

1.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가.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 2호의 주택을 말하며, 마을 내 주택간 거리는 주택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 나. “도로”란 포장면 너비가 6미터 이상이며 왕복2차로 도로를 말한다.
 - 다.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 및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의 소하천을 말한다.
 - 라.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마목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
 - 마. “공공시설”이란 「학교보건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공원, 공공청사를 말한다.
 - 바. “문화재”란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전통사찰,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
2. 폐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 가. 도로 경계에서 200미터
 - 나.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200미터(다만, 5호 미만은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로 하며 해당거주자 및 건축주 동의 시 제외)
 - 다. 하천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 라. 공공시설, 문화재 경계로부터 300미터
 - 마.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경지정리지구에 한정함)
 - 바.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고 자연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심의를 통해 입지 제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내 입지를 제한한다. <조항신설 2018.6.29.></p> <p>1. (생 략)</p> <p>2. 주거 밀집지역(5호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1호, 2호의 주택. 마을 내 주택간 거리는 주택 부지 지적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종교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이며, 발전시설 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은 <u>500미터</u></p> <p>2의2. ~ 5.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u><신 설></u></p>	<p>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 <u>500미터 (다만, 남원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확인된 시민이 100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 할 경우, 차폐시설(임야)이 존재할 때는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50퍼센트 완화하여 적용한다)</u></p> <p>2의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u>제20조의3(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특</u></p>

현행	개정안
<p>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생략)</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1. ~ 3. (생략)</p> <p>⑦ ~ ⑨ (생략)</p> <p>제5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u>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0의 기준에 따른다.</u></p> <p><u>② 사업부지 경계에 울타리 및 차폐목(遮蔽木)을 3미터 이상 설치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u></p> <p><u>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차장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u></p> <p>제57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영 제84조제8항-----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⑦ ~ ⑨ (현행과 같음)</p> <p>제58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 -----.</p> <p>1. ~ 6.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 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p>	<p>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 7항----- ----- ----- ----- -----.</p>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81 호

남원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원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남원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
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
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
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평가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북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원시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평가단원은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별지 2호서식의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④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⑤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3등급으로 구분된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표시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시 유의 표시 [별지 제4호서식]
3. 사용가능 표시 [별지 제5호서식]

⑥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잘 보이는 위치에 부

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⑦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또는 인근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북도 및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 ①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회원번호		신청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소속		직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input type="checkbox"/> 교량·터널 <input type="checkbox"/> 댐·저수지 <input type="checkbox"/> 철도 <input type="checkbox"/> 원자력시설 <input type="checkbox"/> 항만 <input type="checkbox"/> 가스·전력·통신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활동하고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제4조제1항 관련)

성 명: 사 진

소 속:

주 소: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함.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남원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Tel : 063-634-49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위험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함.

- 평가일시 :
- 위험요소 : 구조체(000,000), 낙하물(000, 000)
- 점검의견 : 000 주의 필요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3-634-4949]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노랑>

사용 시 유의

이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 시 유의바람.

- 평가일시 :
- 주의사항 : 000 주의 필요
- 점검의견 : 000 조치 시 사용가능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3-634-4949]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이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이 가능함.

□ 평가일시 :
 □ 평가의견 : 000 조치 필요
 ※ 본 위험도 평가결과는 평가시의 상태만을 점검한 결과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입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3-634-4949]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제6조제5항 관련)

이 표지를 떼지 마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따른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위험으로 판단되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남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063-634-4949]

210mm×297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조례 제 1782 호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규칙 제 702 호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의회에서 의결된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규칙 제 703 호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의장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①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그 소관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남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별표]

남원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제3조 관련)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위원장	의장
		담당	전문위원	국장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가. 의회운영계획수립 및 변경					○
	나. 의회 관련 조례·규칙 등 제정·개정·폐지 입안공포					○
	다. 주요업무 및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라.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		
	마.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
	바. 의원 간담회 운영					○
	사. 집행기관과의 협조 관계 - 중요한 사항 - 경미한 사항			○		○
2. 의원에 관한 사항	가. 의원 등록			○		
	나. 의원 사직허가·사직허가 결정 통지					○
	다. 의원 청렴·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
	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
	마. 의원 재산등록·병역사항 신고			○		
	바.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
	사. 의원 신분증 및 각종 증명 발급			○		
	아. 의원의 강의신고					○
	자. 청가 허가					○
	차. 국내외 연수·교육계획 수립					○
	카. 외부기관 교육신청			○		
	타.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 추천					○
	파.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
하. 의원 관외(국외포함) 출장					○	
3.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사항	가. 의원연구단체 구성계획수립					○
	나.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결과보고				○	대표의원
	다. 의원연구단체 관련 행정사항			○		
4. 의전 및 행사에 관한 사항	가. 기본계획수립					○
	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		
	다. 전체 의원 단위 중요행사					○
	라. 그 밖의 일반행사			○		
	마. 의장 포상					○
	바.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
5. 의사에 관한 사항	가. 의회소집요구서의 접수					○
	나.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
	다. 본회의장 의사진행					○
	라. 본회의장 의석배정					○
	마.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
	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과 보고					○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위원장	의장
		담당	전문 위원	국장		
	사. 의사일정 작성					○
	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
	자. 시정질문 접수					○
	차. 시정질문 집행부 송부					○
	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계획					○
	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
	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료제출 요구					○
	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보고					○
	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통보					○
	너. 결산검사위원 위촉					○
	더. 질문서·질문요지서 송부					○
	러. 의정백서 발간					○
	머.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
	6. 의안에 관한 사항	가. 의안접수·회부				
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
다. 철회된 의안통지						○
라. 의안 심사결과 보고						○
마. 의안처리결과의 통지						○
바. 의안의 배부						○
사.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		
7. 청원에 관한 사항	가. 청원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
	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및 통지					○
8. 진정서 등 일반민원처리	가. 진정서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
	나. 처리결과 이송 및 통지					○
9. 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	
	나. 자료제출 요구				○	
	다.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	
	라.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마. 의안 검토 보고		○			
	바.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	
	사. 위원회 문서의 처리				○	
	아. 위원회 회의 준비 및 진행 지원 사항		○			
	자. 위원회 회의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	
	차. 위원회 주관 토론회, 공청회 등 운영				○	
	카.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	
타. 현장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파. 위원회 비교견학 및 간담회 추진				○		
10. 회의록에 관한 사항	가. 회의록 발간					○
	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		
	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
11. 회의장 질서 에 관한 사항	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
	가. 경호요청					○
	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
	다. 참관의 허가					○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위원장	의장
		담당	전문 위원	국장		
	라. 방청권의 발행교부					○
12. 의정홍보 에 관한 사항	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
	나. 언론 인터뷰·기획보도·기자회견					○
	다. 보도자료 작성, 오보대응, 기자간담회			○		
	라. 보도자료 배포, 스크랩, 모니터링	○				
	마. 일간지, 신문, 외부간행물 구독 및 배부			○		
	바.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		
	사. 축사·인사말씀 작성					○
	아.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
	자.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		
	차. 간행물(의회소식지, 홍보책자 포함) 발간 계획					○
	카. 간행물 관련 자료수집, 업체선정, 배포			○		
	타. 의회활동 사진·영상 촬영, 보존, 장비관리			○		
	파.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방송실 운영			○		
13. 공인관리 에 관한 사항	가. 공인 신조					○
	나. 공인 폐기·재등록			○		
	다. 공인 관리			○		
14. 직원 인사, 교육, 복무 등에 관한 사항	가. 직원 채용계획,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
	나. 직원 채용절차 이행, 인사발령 통보			○		
	다. 인사기록카드 관리			○		
	라. 직원 전출·전입 동의					○
	마. 인사위원회 구성					○
	바. 직원 근무성적평정			○		
	사. 직원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명령			○		
	아. 직원 사무분장, 사무인계인수			○		
	자. 직원 호봉승급 등 보수 운영			○		
	차. 직원 근무상황 관리 (출장, 연가, 휴가 등)			○		
	카. 직원 국외연수(출장) 계획 및 연수자 결정					○
	타. 직원 후생복지계획 수립					○
	파. 직원 후생복지 추진			○		
15. 예산 및 회계 관련 서류	가. 의회예산(안) 편성					○
	나. 의회예산(안) 제출			○		
	다. 예산 이월·이용·전용			○		
	라. 예산배정 및 전용 요구서 제출			○		
	마. 예산집행 품의 - 건당 2천만원 이상 - 건당 2천만원 미만			○		○
	바. 의정활동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품의 - 의장 - 부의장 - 운영위원장 - 공통경비				○	○ ○ 부의장 ○
	사. 정기적인 회계집행			○		
	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		

단위업무	세부업무	전결권자			위원장	의장
		담당	전문위원	국장		
	자. 계약 등 회계집행			○		
	차. 재물조사업무			○		
	카. 물품 수급 및 관리			○		
	타. 의회청사관리			○		
	파. 기념품 및 비품관리	○				
16. 문서관리 및 서무 등 그 밖의 사항	가. 기록물 관리			○		
	나. 비밀문서,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		
	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 의원 관련사항 - 사무국 관련사항			○		○
	라.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				
	마. 각종대장, 자료제출			○		
	바. 문서접수 및 선결(중요문서)					○
	사. 문서접수 및 선결(일반문서)			○		
	아. 보안점검일지			○		
	자. 의회도서실 운영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예규 제 30 호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실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남원시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

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부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업무 중 남원시가 사업의 제

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분기별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업무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 신고) ①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가 아닌 시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7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8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9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20조(징계양정 기준) 시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지침 별표2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대상 업무(제5조 관련)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	개발제한 구역 해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제4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8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제9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3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지구의 지정
			제16조	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제17조	지구계획의 승인
4	공항시설 개발사업	「공항시설법」	제7조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5	관광지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지의 지정
			제54조	관광지조성계획의 수립 관광지조성계획의 승인
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88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7	기업도시개발 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4조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12조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8	마을정비구역에 서의 농어촌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103조	마을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9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17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
10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제15조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11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제9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50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제52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101조의3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입안권자의 정비구역 지정 신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정비계획 수립 제안
12	혁신지구재생 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혁신지구계획의 승인
			제46조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작성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13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신청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문화산업단지 조성계획의 시행
			제28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14	물류단지개발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수립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5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제28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작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승인
1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빈집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3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29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3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17	산업단지개발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제17조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작성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2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18	역세권개발 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제13조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9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제27조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 성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 인
20	온천개발사업	「온천법」	제5조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제10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21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및 승인 에 대한 추천 신청
			제35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7조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22	주택건설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 계획의 승인
23	지역개발사업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22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연번	부동산 개발업무	근거 법률	조항	공공기관의 역할
			제23조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45조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24	친수구역 조성사업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제13조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9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7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28	예비타당성 조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예비타당성조사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사업지구로 한정

[별표2]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20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1항의 비밀 보장 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 제2항 위반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등 거부 행위, 제20조의2의 특별보호 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제3조 관련)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3조제2항 관련)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청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② 직무관련자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기타()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제3항 관련)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	--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제3항 관련)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	-----	-----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	----	----	--------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장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제4조제5항 관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직무 대리자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및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소속 공공기관에서의 담당 업무		

부동산 [] 보유자 [] 매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본인 []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주소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

부동산	유형 [] 토지 (□ 소유권 □ 지상권 □ 전세권 □ 분양권) [] 건물 (□ 소유권 □ 전세(임차)권 □ 분양권)	취득(예정)일
	소재지	
	지번	지목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보유·매수한 부동산 관련 소속기관의 업무(사업명)”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에 따라 신고인이 소속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부동산 관련 업무(사업명)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제7조제1항 관련)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	----	----	--------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 본인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① 특수관계사업자

성명	소속	연락처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	----	-----	---------------------------------

거래상대방	②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	---

거래내용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뒷 쪽)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제9조 관련)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제10조 관련)

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익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익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익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 ○ ○

계약상대자(확인인)

(성명 또는 인)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제11조 관련)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비용부담자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제13조제2항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	--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남원시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제14조, 제15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자	신고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이첩·송부 일자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input type="checkbox"/>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 <input type="checkbox"/>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input type="checkbox"/>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조사기관

남원시장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신고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종결처리	신고내용	
	조사기관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감독기관 [] 수사기관 [] 감사원	
종결처리	종결사유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남원시장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제17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일시	장소	
신고사항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남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6호서식] (제19조 관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전자우편 [] 전화 [] 방문 [] 기타()
------	--	------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가족 채용 제한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기타()	

상담내용	
------	--

상담결과	
------	--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 폐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2년 4월 29일

남원시 예규 제 31 호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 폐지지침

남원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을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원시 공고 제 2022 - 991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4월 28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 ²)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m ²)	토지소유자
2022-1 5	남원시 신촌동 18 (전)	차*옥	2022-건축과- 건축신고-82	5.6	1.2	4	18	4	차*옥

남원시 공고 제2022 - 9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27. ~ 2022. 5. 12.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4.26.)	최○석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75-1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73	주1 목조 주택 31.9㎡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26.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공고 제2022 - 9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27. ~ 2022. 5. 12. (15일간)
2. 공고장소 : 남원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소유자 현황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 : 2022.4.26.)	이명남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건축물 부존재	남원시 사매면 오신리 534-1	주1 목조 창고 59.25㎡ 주1 목조 주택 32.4㎡

4. 기타사항

-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나. 기타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 (☎063-620-659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26.

남 원 시



장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남원시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원시 공고 제 2022 - 1015호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남 원 시 장

○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정 번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 ²)	이해관계인		
							지 번	편입면적 (m ²)	토지소유자
2022-1 6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299-1 (대)	김*운	2022-건축과- 건축신고-85	12.6	0.4	5	299-1	5	김*운